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731-6156 / 전송(02)731-6562
 처리부서: 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법무담당관 박돌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 이순재

문서번호 법무 11010-2161
 시행일자 1999. 9. 20 (년)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영구	결재 1999. 9. 17 기회예산장 박돌봉	
기획 예산 실	전 결		
법 담 당	무 관	박돌봉	
* 기 안 이순재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합조

제목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3건 발령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3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예규 제 670-672호

가. 발령예정일 : '99. 9. 20.(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에규 제670-672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각1부. 끝.

서울특별시 장

(제2안)

수신 : 홍보담당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3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9. 20.(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에규 제670-672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각2부. 끝.

법 무 담 당 관

(제3안)

수신 : 농수산유통과장

제목 : 예규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3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9. 20.(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에규 제670-672호

첨부 : 발령목록 1부. 끝.

가...관장

법 무 담 당 관

예 규 발 령 목 록

□ 총 3 (개정)

연 번	법 규 명	번 호	주 관 부 서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증개정규정	제670호	농수산유통과
2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 증개정규정	제671호	농수산유통과
3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부도매시장업무규 정증개정규정	제672호	농수산유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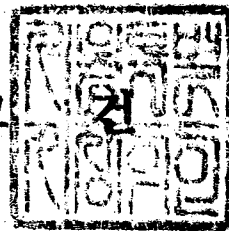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

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년 9 월 20 일

서울특별시장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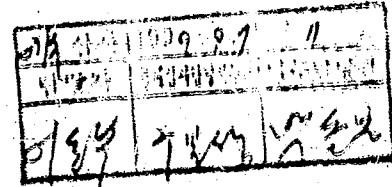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가라봉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납품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의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의 개정('99. 5. 30)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및아예마천은실보상등에관한조례의 개정('99. 7. 3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활자



가. 중도매입 허가취소 사유중 그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함(안 제47조 제1항 제4호).

- 중도매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벌 또는 신탁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원지안 송신을 기점으로서 중도매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실효성을 상실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량 및 가격의 게시의무를 폐지함(안 제47조제1항)

다. 조례기 유망부담금의 징수 대행자에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추가함(안 제51조의2제5항).

라. 적출위생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점사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위를 마련함(안 제55조의2)

마. 기타 경매 참가 거부사유, 반입물품의 제한사유 및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중 일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36조, 제55조 및 제65조).

3. 참고사항

가. 관제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1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선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62조(명령)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선자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①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② 규제심사 :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

서울특별시예규 제 670 호

서울특별시가라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인

서울특별시가라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

제40조제3호의 “농림수산부장관” 을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 을 “농림부장관” 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매법인” 을 “도매법인 또는 상장에외품목 취급 중 도매인” 으로 한다.

제55조중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명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명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농산물 안전성 검사)①사장은 시장내 만위·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속성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의 간이속성검사에서 “양성반응” 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993. 2. 11
기석애안실장

제65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통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산실장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7조(중도매입의 허가취소)①(삭제) 제27조(중도매입의 허가취소)①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중도매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중도매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식 또는 신<삭제>

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써 중도매입을 계속하는 것이 신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7.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제36조(경매참가기부 및 담합금지)①(도매업인은 제36조(경매참가기부 및 담합금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입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생략)

3. 사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 자

②(생략)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현행과 같음)

제40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의 우대)①(생략) 제40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의 우대)

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경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품

4.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생략)

제47조(유통정보 공개 등)①(도매업인은 먼저 제47조(유통정보 공개 등)<삭제>

제24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거래량

제51조의2(쓰레기유발 부담금) ①사장은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충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충하를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장규격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농·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다음기 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법인·도매시장공관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사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④(생략)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출하사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5%이내에서 필요경비를 도매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⑦(생략)

제55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쓰레기유발 부담금) ①

농림부장관

②~④(현행과 같음)

⑤

도매법인 또는 상장에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도매법인

또는 상장에외품목취급 중도매인

⑥~⑦(현행과 같음)

제55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

(신설) 제55조의2(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사장은 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속성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의 간이속성검사에서 "양성 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5조(시설사용의 규제)가장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토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장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간혹,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될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생략)

제65조(시설사용의 규제)-----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식민 보건 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점용 등 토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토매시장의 이진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채납하였을 때
7. (헌행과 감유)